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경 과

가. 발 의 자 : 박기열 의원 (찬성자 33명)

나. 의안번호 : 제 2278 호

다. 발의일자 : 2021. 4. 1.

라. 회부일자 : 2021. 4. 6.

## 2. 제안이유

- 2019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턴키 설계 등을 평가하는 민간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패방지를 위해 2020년 12월 8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지방·특별심의 및 자문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도록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 중 연임 조건을 종전 두 차례 한정에서 한 차례로 함. (안 제2조제4항)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표] 주요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 ① ~ ③ (생략)	제2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두 차례에</u>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 ----- <u>한 차례에</u> ----- ----- ----- -----.

-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당초 민간위원에 대한 임기와 연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한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위원의 임기와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19.1월)함에 따라 지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2020. 12. 8일 개정되었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률과 조례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의 연임이 심의 업무의 연속성 유지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일 수 있으나 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비리 유착 가능성 등 부정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 연임 규정은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
- 그동안 서울시는 현행 조례로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와 연임규정을 별도로 정해왔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 그리고 연임을 두 차례 즉, 최대 4년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3개 기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연임자는 총 위촉위원의 36.5%로 이 중 2회 연임자는 12.1%에 해당함 (〈표〉 참고).
- 본 개정을 통해 연임이 한 차례로 한정되면 앞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기회 확대로 신규 위원이 보강되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표] 최근 3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연임 현황

구 분		제14기	제15기	제16기	비고 (최근 3기 평균)
임 기		2016.3.1. ~2018.2.28	2018.3.1. ~2020.2.29	2020.3.1. ~2022.2.28.	
위촉직 인원수 (전체)		248 (250)	248 (250)	228 (230)	
연임인원	계	83(33.4%)	94(37.9%)	87(38.1%)	36.5%
	1회 연임자 (임기4년)	45(18.1%)	69(27.8%)	62(27.2%)	24.4%
	2회 연임자 (임기 6년)	38(15.3%)	25(10.1%)	25((10.9%)	12.1%